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
폐지조례안

검토보고서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 범 우

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1년 4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○ 개정된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과징금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전부 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

5. 검토의견

○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「관광진흥법」 에서 과징금의 부과·징수의 권한이 당해 “도지사”에서 “관할 등록기관등의 장”으로 개정되었음.

○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. 끝.